

국의 출장보고서

1. 방문국: 일본
2. 방문기관: 후생노동성 고용균등·아동가정국 가정복지과
동경도 복지보건국 저출산사회대책부 육성지원과
3. 출장일시: 2009. 8. 26~8. 29(3박 4일)
4. 출장자: 김승권 선임연구위원

I. 일본의 모자가정 현황

1. 일반현황

- 자료출처: 후생노동성 고용균등·아동가정국 가정복지과
- 모자만으로 구성된 모자세대는 약 75만 세대(2005년도 국민실태조사)
- 모자 이외의 동거자가 있는 세대를 포함한 전체 모자세대수는 약 120만 세대(2006년도 전국모자세대 조사의 추계)
- 아동부양수당수급자 수는 약97만명(2009년 3월말 현재, 복지행정보고)
- 모자세대가 된 이유는, 이혼이 약80%, 사별이 약10%
 - ※ 1983년도에는 이혼이 약50%, 사별이 약40%
- 저연령층의 이혼이 증가함에 따라 약30%가 20대 모자세대가 됨.
- 이혼건수는 약25만건(2008년). 종래, 증가경향이 있었으나, 2003년 이후 약간 감속경향
- 이혼율은 인구 천명당 1.99
 - ※ 미국(4.19), 영국(2.8), 프랑스(2.3)보다 낮고, 이탈리아(0.8), 네덜란드(1.9)보다는 높은 수준
- 참고사항
 - 일본은 이혼율의 증가와 독거노인의 증가 등 다양한 가족형태가 확산되고 있음
 - 1970년부터 2000년까지의 가족형태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점차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가구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나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부부가구와 한부모가구의 비율은 증가추세에 있음

2. 취업현황

- 자료출처: 2006년도 전국모자세대조사
- 모자가정의 약85%가 취업
 - 외국의 한부모가정의 취업률: OECD 평균 70.6%(2005), 미국 73.8%(2005), 영국 56.2%(2005), 프랑스 70.1%(2005), 이탈리아 78.0%(2001), 네덜란드 56.9%(2004)(출처: OECD 「Babie and Bosses」)
- 취업가정 중 정규고용은 43%로 2003년 39%보다 증가
한편, 임시·비정규는 44%로 2003년 49%보다 감소

3. 소득현황

- 모자가정의 평균수입은 213만엔(2006년 전국모자세대조사)
전세대의 평균수입은 564만엔(2006년 국민생활기초조사)
※ 2006년 국민생활기초조사에서의 모자가정 평균수입은 212만엔
- 기초생활보호를 받고 있는 세대는 약10%

4. 양육비 취득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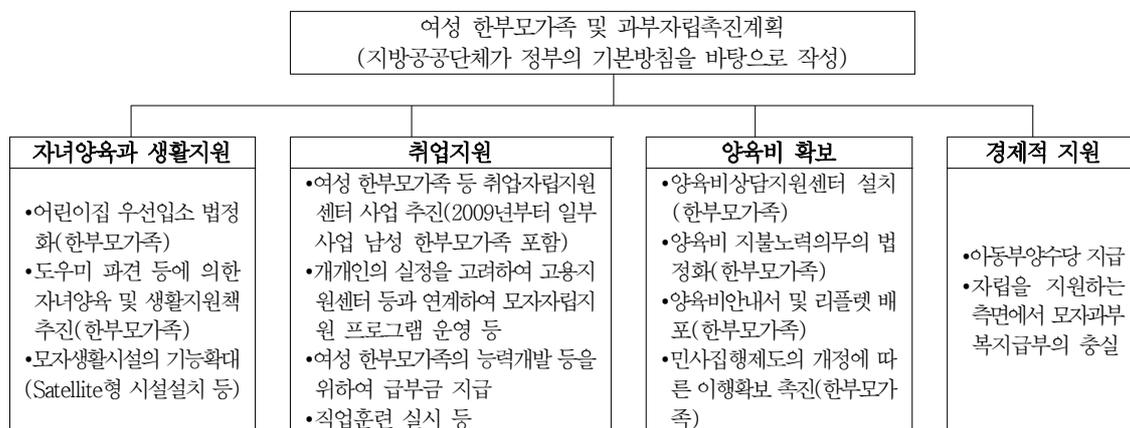
- 자료출처: 2006년도 전국모자세대조사
- 이혼모자가정 중
 - 양육비의 약정을 하고 있다: 약39%
 - 양육비를 현재 지급 받고 있다: 약19%

II. 일본의 한부모가족정책

1. 중앙정부의 주요 한부모가족정책

- 자료출처: 일본후생노동성 내부자료
- 2008년 모자및과부복지법, 아동부양수당 등을 개정하고, '아동부양수당 중심의 지원'에서 '취업·자립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으로 전환하였음
 - 구체적으로는 「자녀양육·생활지원책」, 「취업지원책」, 「양육비 확보책」, 「경제적 지원책」 등 4가지 영역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그림 1] 일본 중앙정부의 한부모가족정책



자료: 일본 후생노동성(2009), 내부자료

① 후생노동성 모자복지자금 급부

- 여성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자립과 안정적 생활을 위해 자금을 대출해 주고 있다. 본 자금은 여러분의 상환금이 다른 여성 한부모가족의 급부재원으로 사용되며, 무리가 없는 상환계획을 세워 반드시 상환해야 함
- 자금급부가 가능한 자는 일정 지역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여성 한부모가족의 모(母) 등으로 20세 미만의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자
- 신청을 위해서는 연대보증인 1인이 필요하며, 급부신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함
 - 심사결과 급부목적 달성을 곤란한 자 또는 사업계획이 적절하지 않을 시에는 선정이 안 될 수도 있음

- 상환방법은 상환기간 내에 원리균등지불 방법에 의하나, 지불은 1년, 6개월, 1월 단위로 상환할 수 있음
 - 위약금을 두고 있는데 1년, 6개월, 1월 단위의 어떠한 경우라도, 지정일에 상환을 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익일로부터 상환한 날의 일수를 계산하여 원리금 당 연 10.75%의 연체이자가 징수됨

〈표 1〉 후생노동성 모자복지자금 급부

자금 명칭	자금의 종류		급부조건				1회 상환액 최고한도액의 월액상환의 경우 대출기간에 따라 다름
	급부 대상	급부금의 내용	급부한도액	거치기간	상환기간	이자	
생활 자금	모	①기능습득기간 중 또는 개호를 받고 있는 기간 중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 ②여성 한부모가족이 된지 7년 미만의 자로 생활안정을 위해 필요한 자금 ③실업기간 중(단, 이혼한 날로부터 1년 이내)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시립 대부기간 1년 이내)	①의 기능습득 기간 중 월액 141,000엔 ①의 의료개호기간 중 및 ②③의 기간 중 월액103,000엔 ④생계중심자가 아닌 경우 69,000엔 ②의 생활안정 기간 중의 양육비 취득을 위한 재관비용(12월 상당) 1,236,000엔	습득기간 만료 후 6개월	20년 이내	무이자	
				의료 또는 개호기간 만료 후 6개월	5년 이내		
				생활안정급부기간 만료 후 6개월	8년 이내	연3%	
			실업급부 기간만료 후 6개월	5년 이내	연3%		

- 일본 후생노동성은 여성 한부모가족의 모(母)에게 주택자금과 전출자금을 대출해 주고 있음
 - 주택자금은 자가주택을 구입하거나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보수, 또는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위한 자금을 말함. 한도액은 150만 엔(한화 약 2,000만원)이며 재해나 노후한 주택일 경우 200만엔(한화 약 2,600만원)을 대출받을 수 있음
 - 전출자금은 전출에 필요한 전세금과 운송비를 위한 비용으로 한도액은 26만엔(한화 약 350만원)이며, 동경도의 여성복지자금급부와 동일

〈표 2〉 후생노동성 모자복지자금 급부(동경도 여성복지 자금급부와 동일)

자금 명칭	자금의 종류		급부조건				1회 상환액 최고한도액의 월액상환의 경우
	급부 대상	급부금의 내용	급부한도액	거치기간	상환기간	이자	
주택자금	모	•자기소유의 주택건설, 구입 및 현재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개축·보수 또는 안전에 필요한 자금	•1,500,000엔 •재해, 노후 등에 의해 개축 및 주택건설·구입의 경우 2,000,000엔	급부일로부터 6개월	6년 이내	연3%	22,790엔 (72회)
					7년 이내		
전출자금	모	•전출에 필요한 전세금, 운송비 등을 위한 자금	•260,000엔	급부일로부터 6개월	3년 이내	연3%	7,561엔 (36회)

○ 일본 후생노동성은 여성 한부모가족의 모(母)와 아동에게 의료개호자금을 대출해 주고 있음

— 모자복지자금의 의료개호자금은 개호의 경우 최고 50만엔까지 대출받을 수 있음

<표 3> 후생노동성 모자복지자금 급부(동경도 여성복지자금급부와 동일)

자금의 종류			급부조건				1회 상환액 최고한도액의 월액상환의 경우
자금 명칭	급부대상	급부금의 내용	급부한도액	거치기간	상환기간	이자	
의료개호 자금	모 또는 아동	•의료 또는 개호보험 서비스를 받기 위해 필요한 자금	•의료 340,000엔 •특별 480,000엔 •개호 500,000엔	의료 또는 개호를 받은 기간만료 후 6개월	5년 이내	무이자	

○ 후생노동성 모자복지자금 급부로 여성 한부모가족 자녀에 대한 면학자금
및 결혼자금, 취학지원자금을 대출해 주고 있음

— 면학자금은 자녀가 고교 및 전문대학에 면학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으
로서 학교와 학년별로 차이가 남

— 취학지원자금으로 초등학교부터 전문대 및 작업훈련시설 입소에 필요
한 자금을 말하며, 직업훈련시설 입소의 경우 최대 100만엔(한화 약
1,300만원)까지 대출할 수 있음

<표 4> 후생노동성 모자복지자금 일람표

자금의 종류			급부조건				1회 상환액 최고한도액의 월액상환의 경우
자금 명칭	급부 대상	급부금의 내용	급부한도액	거치기간	상환기간	이자	
면학자금	아동	•아동이 고교, 전문대, 대학 등 에서 면학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	•학교·학년별 급부한도액 참조	졸업 후 6개월	20년 이내 직업훈련학교(일반)5년 이내	무이자	
결혼자금	아동	•혼인에 필요한 자금	•300,000엔	급부일로부터 6개월	5년 이내	연3%	5,391엔 (60회)
취학지원 자금	아동	•초등·중학교 입학에 필요한 자금	•초등 39,500엔 •중학 46,100엔	중학 졸업 후 6개월	20년 이내 직업훈련학교(일반) 5년 이내	무이자	
		•아동이 고교, 전문대, 대학 입 학에 필요한 자금	•인문·실업고교 85,000엔 •사립고교, 고등전문학교입학 420,000엔 •국공립대학, 단기대학, 직업전문 고 등과정 입학 380,000엔 •사립대학, 단기대학, 직업전문 고 등과정 입학 590,000엔	졸업 후 6개월			
		•지식기능을 습득하기 위해 후 생노동대신이 정한 직업훈련시 설 입소에 필요한 자금	•중졸 85,000엔 •고졸 100,000엔	습득기간만료 후 6개월	5년 이내		

○ 전술한 일본 후생노동성의 「모자복지자금」 중 「면학자금」의 학교·학년별
급부한도액은 <표 5>에 제시

〈표 5〉 후생노동성 「모자복지자금」 중 「면학자금」의 학교·학년별 금부한도액

(월액, 단위: 엔)

학교종별		통학	1년	2년	3년	4년	5년	비고
고등 학교	국공 립	자택	18,000	18,000	18,000			*거치기간:졸 업 후 6개월간 *무이자 *상환기한:거 치기간 경과 후 20년 이내
		통학	(27,000)	(27,000)	(27,000)			
중등 교육 학교	사립	자택외	23,000	23,000	23,000			
		통학	(34,500)	(34,500)	(34,500)			
		자택	30,000	30,000	30,000			
		통학	(45,000)	(45,000)	(45,000)			
고등 전문 학교	국공 립	자택	21,000	21,000	21,000	45,000	45,000	
		통학	(31,500)	(31,500)	(31,500)	(67,500)	(67,500)	
		자택외	22,500	22,500	22,500	51,000	51,000	
		통학	(33,750)	(33,750)	(33,750)	(76,500)	(76,500)	
	사립	자택	32,000	32,000	32,000	53,000	53,000	
		통학	(48,000)	(48,000)	(48,000)	(79,500)	(79,500)	
		자택외	35,000	35,000	35,000	60,000	60,000	
		통학	(52,500)	(52,500)	(52,500)	(90,000)	(90,000)	
단기 대학	국공 립	자택	45,000	45,000				
		통학	(67,500)	(67,500)				
	사립	자택외	51,000	51,000				
		통학	(76,500)	(76,500)				
전문 대학 (전문)	국공 립	자택	53,000	53,000				
		통학	(79,500)	(79,500)				
	사립	자택외	60,000	60,000				
		통학	(90,000)	(90,000)				
대학교	국공 립	자택	45,000	45,000	45,000	45,000		
		통학	(67,500)	(67,500)	(67,500)	(67,500)		
	사립	자택외	51,000	51,000	51,000	51,000		
		통학	(76,500)	(76,500)	(76,500)	(76,500)		
전문 대학 (일반)	국공 립	자택	54,000	54,000	54,000	54,000		
		통학	(81,000)	(81,000)	(81,000)	(81,000)		
전문 대학 (일반)	국공 립	자택외	64,000	64,000	64,000	64,000		
		통학	(96,000)	(96,000)	(96,000)	(96,000)		
전문 대학 (일반)	국공 립	자택	30,000	30,000				
		통학	(45,000)	(45,000)				

주) ()는 심사결과, 면학을 위해 일반한도액의 초과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의 금부가
가능한 금액임.

- 일본의 직업훈련 및 취업관련 후생노동성 모자복지자금은 여성 한부모가
족의 모를 대상으로 대출해주는 사업개시자금, 사업계속자금, 기능습득자
금이 있으며, 사업개시자금의 경우 최고 283만엔(한화 약 3,67만원)까지
대출 가능함
- 그 외에 자녀의 사업개시나 취직에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는 비용을 대출

- 해 주는 취업자금이 있으며, 모와 자녀는 취업에 필요한 의복 및 장비를 구입할 수 있도록 취직지원자금도 대출받을 수 있음
- 이와 같은 사항은 동경도의 여성복지자금과 동일

〈표 6〉 후생노동성 모자복지자금 일람표

자금 명칭	급부 대상	자금의 종류		급부조건		
		급부금의 내용	급부한도액	거치기간	상환기간	이자
사업개시 자금	모	•사업개시에 필요한 설비 등 구입 자금	•2,830,000엔 •여성 한부모가족의 모의 공동사업의 경우 4,260,000엔	급부일로부터 1년	거치기간 경과 후 7년 이내	무이자
사업계속 자금	모	•현재 운영하고 있는 사업을 계속하기 위한 자금	•1,420,000엔	급부일로부터 6개월	7년 이내	무이자
기능습득 자금	모	•사업개시 또는 취업을 위하여 지식기능 습득에 필요한 자금	•지식기능을 습득하는 기간 중(3년 이내) 월액 65,000엔 •운전면허를 습득하는 경우 460,000엔 •지식기능을 습득하는 기간 중(3년 이내) *1월액 65,000엔	습득기간 만료 후 1년간	20년 이내	무이자
취업자금	아동	•아동이 사업개시 또는 취업을 위하여 필요한 지식기능을 습득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	•고교3년 재학 시에 취업을 희망하는 아동이 운 전면허를 습득하는 경우 460,000엔	습득기간 만료 후 1년간	6년 이내	무이자
취직지원 자금	모 또는 아동	•취직을 위해 직접 필요한 의복, 장비 등을 구입하는 자금	•100,000엔 •통근을 위해 자전거를 구입한 경우 320,000엔	급부일로부터 1년간	6년 이내	무이자

② 아동부양수당

- 0~18세의 아동 중에서 부(父)가 사망한 아동, 부(父)로부터 1년 이상 유기된 아동, 부모가 이혼한 아동, 부(父)가 법령에 의해 1년 이상 구금된 아동, 부(父)가 중증 장애가 있는 아동, 혼인에 의하지 않고 출생한 아동, 부(父)가 행방불명인 경우는 아동부양수당을 지급 받음
- 전부지급은 41,720엔(한화 약 543,000원)이고, 일부지급은 9,850~41,710엔(한화 약 128,000~542,000원)

〈표 7〉 일본 아동부양수당의 주요 내용

구분	아동부양수당			
지급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18세(18세가 되는 날로부터 최초 3월 31일 사이, 또한 20세 미만으로 법령에서 정하는 정도의 장애를 가진 아동을 포함함)의 다음의 경우에서 어느 한가지라도 해당되는 아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가 사망한 아동 •부로부터 1년 이상 유기된 아동 •부모가 이혼한 아동 •부가 법령에 의해 1년 이상 구금된 아동 •부가 중증 장애가 있는 아동 •혼인에 의하지 않고 출생한 아동 •부가 행방불명인 아동 			
지급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동이 부 또는 모의 사망으로 유족연금 등을 받게 된 경우 •아동이 부에게 지급된 연금의 가산대상이 된 경우 •아동이 수양부모에게 위탁된 경우 •아동이 아동복지시설 등에 입소하고 있는 경우 •아동이 부와 생계를 함께하고 있는 경우 •아동이 모의 배우자(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에게 양육되고 있는 경우 •청구자가 노령복지연금 이외의 연금을 수급 받을 수 있게 된 경우 •청구자 또는 그 부양의무자 등의 전년(1월부터 7월까지의 월별 수당에 대해서는 전전년)의 소득이 일정 이상인 경우 •청구자 또는 아동이 일본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않는 경우 			
지급 방법	•원칙적으로 매년 4월(12월부터 3월분)·8월(4월부터 7월분)·12월(8월부터 11월분)에 전월분까지를 합산하여 지급			
수당액 (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부지급 41,720엔 •일부지급 9,850~41,710엔 			
소득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은 연간총수입액으로부터 급여소득의 경우는 급여소득공제를, 사업소득 등의 경우는 필요경비를 각각 뺀 액 수 •소득제한한도액 			
	부양친족 등 인수	수급자격자 본인		배우자·부양의무자 고아 등의 양육자
		전부 지급	일부 지급	
	0인	19만엔	192만엔	236만엔
	1인	57만엔	230만엔	274만엔
	2인	95만엔	268만엔	312만엔
	3인	133만엔	306만엔	350만엔
4인	171만엔	344만엔	388만엔	
5인 이상	1인당 38만엔 가산	1인당 38만엔 가산	1인당 38만엔 가산	
<p>주) 수급자격자본인의 소득이 [전부지급]의 소득제한한도액 이상일 경우는 [일부지급]으로 됨; 수급자격자본인의 소득이 [일부지급]의 소득제한한도액 이상일 경우는 지급정지됨; 배우자·부양의무자·고아 등의 양육자의 소득이 소득 제한한도액 이상의 경우는 수급자격자 본인의 소득과 상관없이 지급정지됨.</p>				
일부 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동부양수당은 수급자격자 본인의 소득이 전부지급의 소득제한 한도액 이상인 경우에는 일부 지급됨(수급자격자 본인의 소득이 일부지급의 소득제한 한도액 이상인 경우 또는 부양의무자 등의 소득이 소득제한 한도액 이상의 경우 지급정지). •2008년 4월부터 수당수급 자격자가 된 날로부터 5년 경과 후에는 수급자격자 또는 그 친족의 장애·질병 등에 의해 취업이 곤란한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취업의욕이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소득 및 아동의 수에 따라 계산된 지급수당의 절반을 지급할 가능성이 있음. •수당의 수급자격자가 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달의 2개월 전에는 담당 구청 등으로부터 [아동부양수당의 지급에 관한 중요 안내서]가 송부됨. 안내서에 따라 취업을 하고 있는 등의 신고절차를 마치면 5년이 경과한 후에도 경과 전과 같은 금액의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음. 			

③ 아동수당

- <표 8>에 나타난 소득제한한도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3세 미만의 아동은 일률적으로 1만엔(한화 약 13만원), 3세 이상의 아동은 첫째아 5천엔(한화 약 65,000원), 둘째아 5천엔(한화 약 65,000원), 셋째아 이후 1만엔(한화 약

13만원)을 아동수당으로 지급

〈표 8〉 일본 아동수당의 주요 내용

구분	아동수당		
지급요건	•초등학교 졸업 전(12세가 되는 날로부터 최초 3월 31일까지)의 아동		
지급제한	•청구자의 전년(1월부터 5월까지의 매월 수당에 대해서는 전전년) 소득이 일정액 이상인 경우		
지급방법	•원칙적으로 매년, 2월(10월부터 1월분)·6월(2월부터 5월분)·10월(6월부터 9월분)에 전월분을 합산하여 지급		
수당액(월)	•3세 미만의 아동: 일률적으로 1만엔 •3세 이상의 아동: 첫째 5천엔, 둘째 5천엔, 셋째이후 1만엔		
소득제한	※ 소득은 연간총수입액으로부터 급여소득의 경우는 급여소득공제를, 사업소득 등의 경우는 필요경비를 각각 뺀 액수 •소득제한한도액(한도액 이상일 경우 아동수당 지급없음)		
	부양친족 등 인수	자영업자 (국민연금가입자)	직장인 (후생연금가입자)
	0인	460만엔	532만엔
	1인	498만엔	570만엔
	2인	536만엔	608만엔
	3인	574만엔	646만엔
	4인	612만엔	684만엔
5인 이상	1인당 38만엔 가산	1인당 38만엔 가산	

2. 동경도의 한부모가족정책

① 동경도 여성복지 자금급부

- 동경도는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안정적 생활을 위해 자금을 대출해 주고 있으며, 본 자금은 여러분의 상환금이 다른 여성의 급부 재원으로 사용됨
- 무리가 없는 상환계획을 세워 반드시 상환해야 함
- 자금급부가 가능한 자는 배우자가 없이 동경도 내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여성으로 ① 부모, 자녀, 형제자매 등을 부양하고 있는 자(소득 제한 없음), ② 부모, 자녀, 형제자매 등을 부양하고 있지 않은 자는 연간 소득이 2,036,000엔 이하로 다음의 경우에 어느 한 가지라도 해당되는 자 등임
 - 애초부터 여성 한부모가족의 모(母)로서 자녀를 부양한 적이 있는 자
 - 결혼을 한 적이 있는 40세 이상의 자
 - 위의 경우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급부의 필요성이 있다고 동경도지사가 인정한 자
- 신청을 위해서는 연대보증인 1인이 필요하며, 급부신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며, 심사결과 급부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자 또는 사업계획이 적절

하지 않는 때는 선정이 안 될 수도 있음

○ 상환방법은 상환기간 내에 원리균등지불 방법에 의하나, 지불은 1년, 6개월, 1월 단위로 상환할 수 있음

— 1년, 6개월, 1월 단위의 어떠한 경우라도, 지정일에 상환을 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익일로부터 상환한 날의 일수를 계산하여 원리금 당 연 10.75%의 연체이자가 징수됨

〈표 9〉 동경도 「여성복지자금」 일람표

자금 명칭	금부 대상	자금의 종류	금부조건				1회 상환액 최고한도액 월액상환
		금부금의 내용	금부한도액	거치 기간	상환 기간	이자	
생활 자금	여성	①기능습득기간 중 또는 개호를 받고 있는 기간 중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 ②여성 한부모가족인 된지 7년 미만의 자로 생활안정을 위해 필요한 자금 ③실업기간 중(단, 이혼한 날로부터 1년 이내)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실업급여기간 1년 이내)	•①의 기능습득 기간 중 월액 141,000엔 •②③의 기간 중 월액 103,000엔	습득기간 만료 후 6개월 의료 또는 개호 기간 만료 후 6개월 실업급여 기간 만료 후 6개월	20년 이내 5년 이내	무 이자 연3%	대출기간에 따라 다름

○ 동경도 「여성복지자금」 중 「면학자금」의 학교·학년별 금부한도액은 후생노동성 모자복지자금 중 면학자금의 학교·학년별 금부한도액과 동일 기준

〈표 10〉 동경도 여성복지 자금금부

자금 명칭	금부대상	자금의 종류	금부조건				1회 상환액 최고한도액의 월액상환
		금부금의 내용	금부한도액	거치 기간	상환 기간	이자	
면학 자금	여성 또는 부양하고 있는 자녀	•여성 또는 부양하고 있는 자녀가 고교, 전문대, 대학 등에서 면학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	•학교·학년별 금부한도액 참조	졸업 후 6개월	20년 이내	무 이자	
결혼 자금	여성 또는 부양하고 있는 자녀	•혼인에 필요한 자금	•300,000엔	대부일로부터 6개월	5년 이내	연 3%	5,391엔 (60회)
취학 지원 자금	여성 또는 부양하고 있는 자녀	•초등중학교 입학에 필요한 자금 •아동이 고교, 전문대, 대학 입학에 필요한 자금	•초등 39,500엔 •중학 46,100엔 •인문·실업고교 100,000엔 •사립고교, 고등전문학교 입학 420,000엔 •국공립대학 단기대학 작업전문고등과정 입학 380,000엔 •사립대학 단기대학 작업전문고등과정 입학 590,000엔	중학 졸업 후 6개월 졸업 후 6개월	20년 이내	무 이자	

② 동경도의 아동육성수당

- 아동육성수당은 동경도 자체사업으로 일정소득 이하의 경우에 다음의 기준에 해당되면 수당을 지급하며, 크게 육성수당과 장애수당으로 구분
 - 전자는 부(父) 또는 모(母)가 사망한 아동, 부(父) 또는 모(母)에 의해 1년 이상 유기된 아동, 부모가 이혼한 아동, 부(父) 또는 모(母)가 법령에 의해 1년 이상 구금되어 있는 아동, 부(父) 또는 모(母)가 중증 장애를 갖고 있는 아동, 혼인에 의하지 않고 출생한 아동, 부(父) 또는 모(母)가 행방불명이 된 18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
 - 후자는 20세 미만으로 심신장애가 있으며, 그 정도가 일정기준(표 3-31 참조)에 해당될 경우 지급
 - 1인당 육성수당은 13,500엔(한화 약 175,500원), 장애수당은 15,500엔(한화 약 201,500원)

〈표 11〉 일본 아동수당의 주요 내용

구분	아동육성수당																
지급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육성수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18세(18세가 되는 날로부터 최초 3월 31일 사이)로 다음의 경우에서 어느 한가지라도 해당되는 아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 또는 모가 사망한 아동 - 부 또는 모에 의해 1년 이상 유기된 아동 - 부모가 이혼한 아동 - 부 또는 모가 법령에 의해 1년 이상 구금되어 있는 아동 - 부 또는 모가 중증 장애를 갖고 있는 아동 - 혼인에 의하지 않고 출생한 아동 - 부 또는 모가 행방불명이 된 아동 □ 장애수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세 미만으로 심신의 장애가 있으며, 그 정도가 다음의 경우에서 어느 한가지라도 해당되는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적장애로 [사랑의 수첩] 1·2·3도 정도 - 신체장애로 [신체장애자 수첩] 1·2급 정도 - 뇌성마비 또는 진행성근육위축증 																
지급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이 아동복지시설에 입소한 경우 • 아동이 부 또는 모와 생계를 함께하고 있는 경우(육성수당의 경우만) • 아동이 부 및 부의 배우자 또는 모 및 모의 배우자와 생계를 함께하고 있는 경우 • 배우자란 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함(육성수당의 경우만) • 청구자의 전년(1월부터 5월까지의 월별 수당에 대해서는 전전년)의 소득이 부터 이상 있는 경우 																
지급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칙적으로 매년, 2월(10월부터 1월분)·6월(2월부터 5월분)·10월(6월부터 9월분)에 전월분을 합산하여 지급 																
수당액(월)	육성수당 13,500엔/1인, 장애수당 15,500엔/1인																
소득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은 연간총수입액으로부터 급여소득의 경우는 급여소득공제를, 사업소득 등의 경우는 필요경비를 각각 뺀 액수 • 소득제한한도액(한도액 이상일 경우 아동육성수당 지급없음)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부양친족 등 인수</th> <th>육성수당·장애수당</th> <th>부양친족 등 인수</th> <th>육성수당·장애수당</th> </tr> </thead> <tbody> <tr> <td>0인</td> <td>360.4만엔</td> <td>3인</td> <td>474.4만엔</td> </tr> <tr> <td>1인</td> <td>398.4만엔</td> <td>4인</td> <td>512.4만엔</td> </tr> <tr> <td>2인</td> <td>436.4만엔</td> <td>5인 이상</td> <td>1인당 38만엔 가산</td> </tr> </tbody> </table>	부양친족 등 인수	육성수당·장애수당	부양친족 등 인수	육성수당·장애수당	0인	360.4만엔	3인	474.4만엔	1인	398.4만엔	4인	512.4만엔	2인	436.4만엔	5인 이상	1인당 38만엔 가산
부양친족 등 인수	육성수당·장애수당	부양친족 등 인수	육성수당·장애수당														
0인	360.4만엔	3인	474.4만엔														
1인	398.4만엔	4인	512.4만엔														
2인	436.4만엔	5인 이상	1인당 38만엔 가산														

3. 동경도 쓰기나미區의 한부모가족정책

① 한부모가족 도우미(헬파)서비스

- 여성 한부모가족의 모(母)와 남성 한부모가족의 부(父)가 취업으로 가사 또는 육아 등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고 있는 경우에 도우미를 파견하는 제도임
- 쓰기나미구에 주소를 두고 의무교육 종료 전의 아동이 있는 한부모가족으로, 한부모가족이 된 지 일 년 이내의 가정, 초등학교 3학년 이하의 아동이 있는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의 부(父) 또는 모(母)가 질병이 있는 경우, 또한 의무교육 종료 전의 아동이 일시적으로 질병이 있는 경우, 친족 등의 관혼상제에 한부모가족의 부(父) 또는 모(母)가 출석한 경우, 가사 및 육아를 하는 동거 조부모가 일시적으로 질병이 있는 경우, 기타 도우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임
- 일상생활에서 지장을 받고 있는 부분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월 12회 이내에서 오전 7시~오후 10시 사이에 1시간 단위로 2~8시간을 이용할 수 있다. 계속 파견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 이내로 제한함
- 이용비용은 소득에 따라 결정되며, 저소득층은 무료이고, 1시간당 최고 1,290엔(한화 약 16,800원)을 지불.

〈표 12〉 동경도 쓰기나미구의 한부모가족 도우미(헬파)서비스

구분	주요 내용
대상가정	<input type="checkbox"/> 쓰기나미구에 주소를 두고, 의무교육 종료 전의 아동이 있는 한부모가족으로 다음의 경우에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는 자 •한부모가족이 된 지 2년 이내의 가정 •초등학교 3학년 이하의 아동이 있는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의 부 또는 모가 질병이 있는 경우, 또한 의무교육 종료 전의 아동이 일시적으로 질병이 있는 경우 •친족 등의 관혼상제에 한부모가족의 부 또는 모가 출석한 경우 •가사 및 육아를 하는 동거 조부모가 일시적으로 질병이 있는 경우 •기타 도우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파견내용	•일상생활에서 지장을 받고 있는 부분을 지원받을 수 있음. (식사, 청소, 세탁, 육아, 보육시설 통원)
파견회수	•회수: 월 12회 이내 •시간: 오전7시~오후10시 사이에 1시간 단위로 2~8시간 •파견기간: 계속 파견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 이내
비용	•소득에 따라 정함(1시간당 0~1,290엔)
신청절차	•아동가정지원센터 방문 후 필요서류 준비
이용방법	•파견결정 후, 파견사업소에 전화로 요청 •계속 파견을 원할 경우에는 전월 20일전에 신청서 제출

② 의료비 지원

- 동경도 쓰기나미區는 보험진료 자기부담금의 의료비를 지원한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한부모가족 의료증이 필요하므로 먼저 의료증 발급신청을 해야 함
- 0~18세(18세가 된 날로부터 최초 3월 31일까지, 장애가 있는 경우는 20세 미만)까지의 다음 <표 13>에 제시된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는 아동과 그 아동을 현재 양육하고, 지역 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부(父) 또는 모(母) (또는 양육자)로 국민건강보험, 사회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는 자가 이음 함

<표 13> 동경도 쓰기나미구의 한부모가족 의료비 지원

구분	주요 내용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18세(18세가 된 날로부터 최초 3월 31일까지, 장애가 있는 경우는 20세 미만)까지의 다음에 경우에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는 아동과 그 아동을 현재 양육하고 지역 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부 또는 모(또는 양육자)로 국민건강보험, 사회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는 자 •부모가 이혼한 후, 부 또는 모와 생계를 달리하는 아동 •부 또는 모가 사망한 아동 •부 또는 모가 중증 장애(2급 이상)를 갖고 있는 아동 •부 또는 모가 생사불명인 경우 •부 또는 모에게 1년 이상 유기된 아동 •부 또는 모가 법령에 의해 1년 이상 구금된 아동 •혼인에 의하지 않고 태어나 부 또는 모와 생계를 달리하고 있는 아동 										
지원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청자 또는 부양의무자 등의 전전년 소득이 일정 이상인 경우 •생활보호를 받고 있는 경우 •아동이 아동복지시설 등에 입소해 있는 경우 •이 외, 공적자금으로 의료비 지원이 있는 경우 										
지원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험증을 사용하여 병원 등에서 의료·약제지급을 받았을 때 창구에서 지불한 보험의 자기부담금 •단지, 보험진료외의 의료비와 다음의 일부부담금은 지원대상이 아님.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head> <tr> <th></th> <th>외래</th> <th>입원</th> </tr> </thead> <tbody> <tr> <td>과세</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료비의 10%부담(개인별), 상한: 12,000엔/월 •세대합산의 경우 상한: 44,400엔/월 </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료비의 10% 부담(개인별), 상한: 44,400엔/월 •식사의료표준부담액 1식: 260엔(정액) 또는 생활의료표준부담액 </td> </tr> <tr> <td>비 과세</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담 없음 </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식사의료표준부담액 1식: 260엔(정액) 또는 생활의료표준부담액 </td> </tr> </tbody> </table>		외래	입원	과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료비의 10%부담(개인별), 상한: 12,000엔/월 •세대합산의 경우 상한: 44,400엔/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료비의 10% 부담(개인별), 상한: 44,400엔/월 •식사의료표준부담액 1식: 260엔(정액) 또는 생활의료표준부담액 	비 과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담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식사의료표준부담액 1식: 260엔(정액) 또는 생활의료표준부담액
		외래	입원								
과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료비의 10%부담(개인별), 상한: 12,000엔/월 •세대합산의 경우 상한: 44,400엔/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료비의 10% 부담(개인별), 상한: 44,400엔/월 •식사의료표준부담액 1식: 260엔(정액) 또는 생활의료표준부담액 									
비 과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담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식사의료표준부담액 1식: 260엔(정액) 또는 생활의료표준부담액 									
일부 부담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청자 또는 부양의무자 등은 2008년도 주민세를 근거로 일부부담금을 지불함. 										
지원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부모가족의료증을 취급하는 의료기관 창구에 보건보험증과 의료증을 동시에 제출함. •일단 병원에서 자기부담금을 본인이 지불한 후 발급받은 영수증을 가지고 구청에 신청함. 										

- 보험증을 사용하여 병원 등에서 의료·약제지급을 받았을 때 창구에서 지불한 보험의 자기부담금을 지원받게 됨
 - 다만 보험진료외의 의료비와 다음의 일부부담금은 지원대상이 아님

- 신청자 또는 부양의무자 등은 2008년도 주민세를 근거로 일부부담금을 지불해야 함
 - 신청자 또는 부양의무자 등의 전전년 소득이 일정 이상인 경우, 생활보호를 받고 있는 경우, 아동이 아동복지시설 등에 입소해 있는 경우, 이 외에도 공적자금으로 의료비 지원이 있는 경우 등은 제외

Ⅲ. 한국사회에의 시사점

- 첫째, 한부모가족의 역량강화 및 자립지원을 위한 선제적 투자를 강화해야 함
 - 한부모가족의 규모는 다문화가족에 비하여 10배 이상 많음에도 불구하고 예산투입이 매우 인색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엿볼 수 있음
 - 많은 자녀양육교육비에 투입되고 있음에도 현실적으로 여전히 부족한 실정일 뿐만 아니라 한부모가족의 자립역량을 강화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되지 않고 있음은 많은 한부모가족이 빈곤층으로 전락될 우려가 있다고 하겠음
 - 이는 엄청난 사회부담으로 나타날 것이므로 한부모가족의 역량강화 및 자립지원을 위한 선제적 투자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켜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한부모가족이 된 후 일정기간 동안 집중적 지원을 함으로써 조기에 자립하고 생활안정 및 자녀양육 기반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
 - 여기서 일정기간을 얼마나 설정할 것인지와 집중적 지원을 어느 수준까지 할 것인가가 중요할 것임.
 - 먼저 일정기간은 일본의 경우처럼, 한부모가족이 된 후 3년간으로 볼 수 있으나 사회복지제도가 일본보다 낙후되어 있음을 감안하여 5년으로 함이 적절하다는 판단임
 - 다음으로 집중적 지원은 한부모가족 발생 초기에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고 정해진 일정기간 내에 충분히 자립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함

- 둘째, 한부모가족복지정책은 공공부조, 사회보험, 저소득계층 보호 등으로 나뉘어 대상자의 경제적 상황에 맞는 보호대책을 실시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나, 실질 보호내용에 있어서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극빈층을 제외한 다른 계층에 대한 보호는 미흡한 실정이므로 보호 및 지원 대상의 확대

가 요구됨

- 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한 생계보호와 의료보호를 포함한 지원을 일부 한부모계층에게만 제공하고 있어 한부모가족지원제도가 한부모가족의 특성을 고려한 온전한 보호정책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음
- 또한 한부모가족 지원정책을 체계적으로 마련하기 위해서는 통계의 산출 및 관리가 원활히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음

○ 셋째, 소득평가액 산정시 한부모가족의 부양의무자를 제외한 모(母) 또는 부(父) 본인의 재산과 소득만으로 소득인정액을 산출해야 할 것이다.

- 현재는 부양의무자로부터 지원받는 금품은 전액 소득으로 산정되고 전세를 포함한 부양의무자의 집에 무료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 소득으로 인정되므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가족으로부터 이러한 도움을 받고 있는 한부모가족은 지원대상자 선정에 불이익을 받게 됨
- 이 외에도 소득과 재산이 거의 없으나 생계유지를 위해 승용차를 소유한 경우가 있으므로 생계형 승용차의 범주를 확대하는 것도 고려할 만함

○ 넷째, 아동양육비의 지원대상의 확대와 지원액의 상향조정이 반드시 필요

- 여러 전문가들로부터 가장 빈번하게 지적되는 문제점으로서 현재 10세 미만의 아동 1인당 5만원이 지원되고 있는데, 한부모가족의 경우 아동을 양육하는 부 또는 모는 경제적 부양자와 자녀양육자로서의 역할을 동시에 부담해야 하는 이중부담이 있으므로 아동보육에 대한 수요가 더욱 절박하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지원의 내용과 정도가 현실적으로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판단됨
- 또한 2005년 기준으로 전체 한부모가족 15,887천 가구 중 4% 미만인 15,887가구만이 한부모가족지원법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이 중 일부 한부모가족의 아동만이 아동양육비 또는 보육료 지원을 받고 있어 자녀양육을 위한 실질적인 혜택은 미흡하다고 할 수 있음
- 특히, 고등학생을 위해서는 교육비 전액 지원이 존재하나 초·중학생들에게는 소액의 학용품비 및 교통비 이외에는 자녀양육비 지원은 거의 전무한 실정임

○ 다섯째, 임시거처가 필요한 저소득 한부모가족을 위한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확충, 입소정원 확대, 시설의 환경 개선이 필요함.

- 2008년 말 현재 모자보호시설 41개소, 부자보호시설 1개소, 모자자립시설 3개소, 모자일시보호시설 14개소, 미혼모자시설 27개소, 미혼모자·미혼모 공동생활가정 21개소로 총 107개소에 불과하여 전체 또는 입소를 희망하는 한부모가족수 대비 입소시설수가 부족한 상황
 - 또한 방 1개인 공간에서 거주하는 한부모가족이 많으므로 한 가구별 공간수도 방 2개 이상으로 확보하여 특히 청소년기 자녀들의 생활·교육여건이 개선되어야 할 것임
 - 이 외에도 영구임대아파트도 지역에 따라 주택공급이 부족하여 입주를 오래 기다려야 하는 불편함이 있고, 보증금의 부담으로 입주를 꺼리는 경우도 많아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
- 여섯째, 복지자금의 대출과 관련하여 대부분의 저소득 한부모가족은 저학력, 저임금 근로노동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아 대출 자격요건인 근로능력 및 자립자활 의자가 뚜렷하고 현실성 있는 사업계획서 제시에 한계가 있어 복지자금 대출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대출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함
- 사업계획서 제출과 함께 연대보증인을 요구하여 창업 시도에 어려움이 있다는 불만도 제기되고 있어 대출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상환방법도 본인의 의견과 현실적 환경을 충분히 이해하는 수준에서 다양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음